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45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촬영물·편집물 반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성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6.
3. 회 부 일 : 2025.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범죄와 딥페이크 영상범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의 특징이 어려우며 인터넷에 피해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 최근 범죄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막대한 수입을 얻는 수익사업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범죄 피해자는 피해영상물 삭제나 피해 회복에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촬영물·편집물의 반포 등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신설).

○ 안 부칙에 따르면,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발생하는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장 보칙</u>
<u><신설></u>	제5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제14조제3항·제5항 및 제14조의2 제3항·제5항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로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2. 범죄행위의 기간 및 횟수, 반

현행	개정안
	<u>포등의 규모와 피해의 회복가능성</u> 3. <u>범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u> 4. <u>범죄를 범한 사람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u> 5. <u>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산상태</u>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u> <u>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범죄부터 적용한다.</u>

2. 촬영물·편집물 반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제2조¹⁾는, 성폭력범죄로 음행매개 등 성풍속에 관한 죄, 추행·간음·성매매 등 목적의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등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설된 범죄를 포함하고 있음.

1) 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유형 >

구 분	근거 법률	대상 범죄
제1항제1호	형법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음화제조등, 공연음란
제1항제2호	형법	추행·간음·성매매 등 목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제1항제3호	형법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제1항제4호	형법	강도강간
제1항제5호	성폭력처벌법	특수강도강간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등,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등
제2항	기타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제1항 각 호의 범죄

○ 이중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반포등(제14조의2) 및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제14조의3) 등의 각 범죄²⁾는 주로 디지털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기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져 외부에서는 범행을 발각하기가 어려우므로, 성폭력처벌법은 이들 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분류하고, 수사기관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³⁾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 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 성폭력처벌법의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제14조와 제14조의2는 그 대상이 ‘촬영물 등’과 ‘편집물 등’으로 다를 뿐, 양 조의 각 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하므로, 각 항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

<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 >

조	항	행위 태양	법정형
14	①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②	무단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등의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②	승낙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등의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③	영리의 목적으로 촬영물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4	④	촬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⑤	상습으로 ①~③	①~③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4-2	①	사람의 신체에 관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무단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2	②	무단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 등의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2	②	승낙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 등의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2	③	영리의 목적으로 편집물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무단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4-2	④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4-2	⑤	상습으로 ①~③	①~③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4-3	①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4-3	②	①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4-3	③	상습으로 ①·②	①·②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 등의 범죄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의 구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 등 범죄에 대한 억지와 피해자 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불법한 이익 취득을 배제하는 효과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른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반포등 또는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 등과 유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등을 규정하고 있음.⁴⁾

4)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등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며, 수사기관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등이 허용됨. 참고로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등이 동법 제2조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성교, 유사성교, 자위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등을 의미하는 것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등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벌금형을 선택 형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그 법정형이 성폭력처벌법에 비하여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있지 않음.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 >

조	항	행위 태양	법정형
11	①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1	②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③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이러한 목적으로 광고·소개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④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 알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⑤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⑦	상습으로 ①	①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1-2	①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1-2	②	①에 따른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2	④	상습으로 ①·②	①·②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의2제3항은 미수범 처벌규정임.

□ 한편, 성폭력범죄 전반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012559호, 윤종필의원 대표발의)이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음.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소 관	주요내용	비고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2012559 (윤종필)	여성가족 위원회	성폭력범죄자는 성폭력범죄로 성폭력피해자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담	임기만료 폐기

○ 이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음행매개(제242조), 공연음란(제245조)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격의 성폭력범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지, 강도살인(제338조) 등 다른 유형의 손해배상 대상 범죄에는 도입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성폭력범죄에만 도입하는 것이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⁵⁾

문 의 처
02-6788-5051

5) 제20대국회 제364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8. 9. 12.), 48-49.